차수	개정일자	신청자	주요 개정 내용
1	25.05.01	김준한	제정
2	26.04.08	김준한	1) 본문 임직원 윤리_지적 재산권 추가 2) 본문 반부패행위 세부내용 추가

윤리 헌장 및 실천 규범

결재	담 당 자	부 서 장	대 표 이 사
			
	4 / 8	/	4 / 8

(주)피코하우스테크놀로지
Picohouse Technology Co., Ltd.

(주)피코하우스테크놀로지

6대 윤리헌장

1. 우리는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며, 성실과 최선으로 주어진 책임을 다한다.

2. 우리는 시장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며, 계약관계에 있는 상대방과 공정하게 거래한다.

3. 우리는 고객가치 실현을 위해 안전한 제품과 최상의 서비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

4. 우리는 구성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이를 위해 공정한 근로조건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5. 우리는 국가, 성별, 연령, 장애, 종교, 정치적 견해 등에 따른 차별행동을 하지 않는다.

6. 우리는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하는데 기여한다.

서문

1. 제정 목적

(주)피코하우스테크놀로지는 창의적 연구와 끝없는 도전을 통해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을 지향한다. 윤리경영의 실천은 이를 위한 근간이 되는 바, (주)피코하우스테크놀로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고, 고객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윤리헌장 및 실천 규범을 개정하였다. (주)피코하우스테크놀로지의 모든 구성원은 본 윤리헌장 및 실천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적용 대상

(주)피코하우스테크놀로지에 속한 모든 임직원(계약직 포함) 및 협력사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협력사에는 본사와 직접 거래하는 모든 납품회사 뿐 아니라, 본사의 모든 차 납품회사도 포함된다.)

3. 적용 범위

(주)피코하우스테크놀로지에 속한 모든 임직원과 협력사는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기반으로 하는 규정, 정책,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 관련 규정, 정책, 지침 등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본문

1. 임직원 윤리

우리는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며, 성실과 최선으로 주어진 책임을 다한다.

(1) 기본 자세

1) 임직원은 피코하우스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2)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기업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2) 사명 완수

1)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3) 자기 계발

1) 임직원은 글로벌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4) 공정한 직무 수행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사규를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등 사외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 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이해충돌 회피

1)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2)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임직원은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6) 반부패 행위 금지

1) 임직원은 각 국가별 부패방지 법규를 준수하며, 이해관계자에게 모든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부정한 청탁, 청탁 수락 및 이익 요구 · 수수 · 제공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① 뇌물 : 부패행위는 지위를 공고히 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하여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경제상 이익은 금품 · 자산 · 서비스 · 특혜조건의 지급 등이며 이를 약속이나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부패행위에 해당되어 징계규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주)피코하우스테크놀로지의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한 일체의 뇌물이나 리베이트의 제공 · 수수를 금지하며, UN 부패방지협약 및 각 국가의 반부패 관련 법률 등을 준수하고,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② 선물 및 접대 : 통상적 수준의 선물과 접대는 사업 파트너 간 소통의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업무 관행상 일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통상적 수준을 넘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뇌물 수수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니 거절하거나 제안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 선물 및 접대에는 금품 등 금전적 이익뿐만 아니라 편의를 제공하는 일체의 비금전적 유익도 포함된다.

(7) 공사 구분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된다.
3) 임직원은 근무 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 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업무와 무관한 SNS 활동등 업무상 용도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임직원은 대표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직무를 겸할 수 없다.

(8) 임직원 상호 관계

1)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임직원은 학벌,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연 등에 따른 파벌 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임직원은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5)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9) 건전한 생활

1) 임직원은 사회통념상 건전한 생활 자세에 어긋나지 않도록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 활동을 생활화해야 한다.
2)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고 경조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

(10) 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1)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사장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11) 위조 부품 방지

1) 임직원은 승인되지 않은 원재료 및 부품등을 생산, 사용해서는 안되며,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사용, 판매해서는 안된다.

2) 임직원은 작업장 내에서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등이 사용 또는 생산되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한 경우, 정부 혹은 고객사에 즉시 통보한다.

3) 임직원은 생산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업목적 또는, 계약 조건 등에 맞게 사용,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2) 지적 재산권 보호

1) 임직원은 고객사 및 거래업체의 영업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무단 유출하지 않으며, 업무수행 시 취득한 정보는 사전 허가 및 승인 없이 보관 및 사용하지 않는다.

2) 임직원은 고객사 및 거래업체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존중해야 하며, 회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지식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3) 임직원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과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에서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해야 하며, 위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우리는 시장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며, 계약관계에 있는 상대방과 공정하게 거래한다.

(1) 거래법규 준수

1) 임직원은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 관습을 존중한다.

(2) 자유경쟁 추구

1)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3) 공정한 거래

1) 임직원은 회사가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2) 임직원은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으며, 불공정 기회부여, 불공정 거래행위, 정보유출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임직원은 모든 거래 시에는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한다.

(4) 수출 제한 준수

1) 임직원은 수출제한과 관련한 국가별 법률 및 국제적 규약을 준수해야 한다.
2) 임직원은 수출제한, 경제제재에 해당하는 국가, 지역, 개인과 거래해서는 안된다.
3) 임직원은 수출제한, 경제제재 관련 법률 및 규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3. 고객에 대한 윤리

우리는 고객가치 실현을 위해 안전한 제품과 최상의 서비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

(1) 고객 존중

1)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 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2) 고객 만족

1)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상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2)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3) 고객의 이익 보호

1)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회사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4. 임직원에 대한 윤리

우리는 구성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이를 위해 공정한 근로조건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우리는 국가, 성별, 연령, 장애, 종교 등에 따른 차별행동을 하지 않는다.

(1) 임직원 존중

1) 회사는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 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2) 공정한 대우

1) 회사는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 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 종교적 견해 차이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3) 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1)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4) 삶의 질 향상

1) 회사는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 회사는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리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실행한다.

5.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우리는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하는데 기여한다.

(1)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1)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 발전시켜 사회적 부를 창조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회사는 임직원의 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외의 문화적, 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1) 회사는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 정치인, 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및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2) 회사는 임직원의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회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안전 및 위험예방

1)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4) 환경보호

1)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노사 화합

1)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6) 국제 경영 규범 준수

1) 임직원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해야 한다.

[부칙]

1. 이 지침은 2025 년 5 월 01 일부로 제정 시행한다.